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27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윤재옥ㆍ이인선ㆍ김 건

김기웅 · 김태호 · 최수진

이종배 · 엄태영 · 백종헌

이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 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장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들"의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장 기·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등에게"로,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5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3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4조제5호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밖의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 등) ① -----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 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 추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시장・도지사(「지방자치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 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 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 의 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자 하여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려 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등" 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 이라 한다)-----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 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 ----시 · 도지사등----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 ② 시·도지사등은-----

링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u>시·도지사는</u>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1. 2. (생략)
- ②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

<u>.</u>
1.•2.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은</u>
③ <u>시·도지사등이</u>
-,
④·⑤ (현행과 같음)
세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u>시·도지사등</u>
<u>\(\tau \)</u>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9. (생략)
- ② <u>시·도지사는</u>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할 수 있다.
- 1. ~ 7. (생략)
- ③ (생 략)
- ④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3 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생략)

제32조(과징금) ① <u>시·도지사는</u> 7

1. ~ 9.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은</u>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시 · 도지사등에</u>
게사.
<u>도지사등은</u>
,
ⓒ (처체코 가이)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과징금) ① <u>시·도지사등</u>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u>시·도지사는</u>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 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u> <u>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u> <u>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u>C</u>
<u>.</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u>시 · 도지사등은</u>
② <u>\lambda</u>] •
도지사등은
③ <u>\lambda</u> .
<u>도지사등은</u>

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 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생 략)

-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등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⑥ (생략)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 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 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시 · 도지사등</u>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등은</u>
1. • 2. (현행과 같음)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	
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u>시</u>	<u>시</u> ·
<u>·도지사</u> 또는 대통령령으로	<u>도지사등</u>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u>	② <u>*</u>]•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u>도지사등은</u>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	
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	제83조(청문)
는 <u>시·도지사는</u> 이 법에 따른	<u>시·도지사등은</u>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제)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 1. ~ 4. (생략)
-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가</u>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 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 직원
- 제9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시 · 도지사등</u>
<u>o]</u>
제9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시 • 도지사등이</u>